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. 11. 7 선고 2021가단10440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1. C

2. D

변론 종결2024. 10. 17.

판결 선고2024. 11. 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들과 B 사이에 각 1/11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 29.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들은 B에게 각 1/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
가. 피고 D와 B 사이에 2018. 9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피고 D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C와 B 사이에 12/110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 D와 B 사이에 4/110 지분에 관하여 2018. 9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B에게 12/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

이행하고,

다. 피고 D은 B에게 4/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

판사김철환

별지